

지하차도 침수예방기준을 마련하여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

< 보도 내용 (뉴스1, KBS 등, 6.18) >

- ◆ 오송참사 겪고도 침수 대비 구멍 숭숭...159개 지하차도 통제기준 없었다
 -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되지 않고, 진입차단시설 및 피난·대피시설이 미설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‘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’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내용으로 ‘도로터널 방재지침’ 개정을 완료('24.4.5)하였습니다.
 - 먼저 지하차도가 U자형이면서 하천 500m이내 등 침수우려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,
 - 이에 따라, 국토부 소관 지하차도 중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32개소 (일반국도 29개소, 고속국도 3개소)의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, 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
 - 아울러, 배수펌프 미작동, 침수심 15cm 이상,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즉시 통제할 의무를 부여하고, 진입차단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에 지정된 현장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.
- 또한, 연구용역('24.7~)을 통해 안전난간·사다리 등 피난·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‘도로터널 방재지침’을 추가 개정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해 관계부처,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부서	도로국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927)
	도로시설안전과	담당자	사무관	정준호 (044-201-3932)

1.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(4.5) 주요내용

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

- U자형이면서 하천 500m이내 또는 행안부고시에 따른 침수우려 인정지역*에 위치한 경우 등은 등급 불문 진입차단시설 설치

*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,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등

- 또한, 정보표지판, 비상방송설비, CCTV 등 진입차단시설 운영을 보조하는 설비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

② 침수 통제 기준 도입

- 배수펌프 미작동, 침수심 15cm 이상(전기차 배터리높이 고려), 관련기관 으로부터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즉시 통제

③ 침수시 대응계획 수립의무

- 지하차도 별 현장담당자(2명) 지정, 상황단계 별 점검사항 수립 등 주변 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한 구체적 대응계획을 마련할 의무

2. 지하차도 내 피난·대피시설 예시

